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1980년 9월 10일 제 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차회의에서 통과. 1993년 10월 31일 제 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
에 관한 결정>>에 따라 1차 개정. 1999년 8월 30일 제 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
에 관한 결정>>에 따라 2차 개정. 2005년 10월 27일 제 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8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
에 관한 결정>>에 따라 3차 개정, 2007년 6월 29일 제 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
에 관한 결정>>에 따라 4차 수정. 2007년 12월 29일 제 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
에 관한 결정>>에 따라 5차 수정. 2011년 6월 30일 제 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1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
에 관한 결정>>에 따라 6차 수정. 2018년 8월 31일 제 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차 회의의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
에 관한 결정>>에 따라 7차 수정)

제 1 조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 하나 1 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서 누적 만 183 일을 거주한 개인은 거주자 개인이다. 거주자 개인은 중국 경내 및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 하고 동시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 하고 1 개 납세연도 내에 중국 경내에서의 거주기간이 만 183 일 미만인 개인은 비거주자 개인이다. 비거주자 개인은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납세연도는 양력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이다.

제 2 조 다음 각 호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1) 임금, 급여소득
- (2) 노무보수 소득
- (3) 원고료 소득
- (4) 특허권사용료 소득
- (5) 경영소득
- (6) 이자, 주식배당금, 특별배당금 소득
- (7) 재산임대소득
- (8) 재산양도소득
- (9) 우발소득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전항 제(1)~ 제(4)호의 소득(이하 “종합소득”)은 납세연도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합병 계산한다. 비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 (4)호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취득한 전항 제(5)~ (9)호의 소득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 3 조 개인소득세 세율

- (1) 종합소득, 3%~ 4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율표 별첨)
- (2) 경영소득, 5%~ 35%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율표 별첨)
- (3) 이자, 주식배당금, 특별배당금 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및 우발소득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이다.

제 4 조 다음 각 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 (1) 성(省)급 인민정부, 국무원 부서 위원회 및 중국인민해방군의 군 이상 단위 및 외국조직, 국제조직이 수여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 등 분야의 상금
- (2) 국채 및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 이자
- (3) 국가의 통일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한 보조금, 수당
- (4) 복지비, 무휼금(撫恤金), 구제금
- (5) 보험배상금
- (6) 군인의 전업비, 제대비, 퇴역금
- (7) 국가의 통일 규정에 의거하여 간부, 직원에게 발급된 정착비, 퇴직비, 기본양로금 또는 퇴직비, 이직비, 이직생활보조금
- (8) 유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해야 하는 각 국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인원의 소득
- (9) 중국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공약, 체결한 협정에서 면세를 규정한 소득
- (10) 국무원이 정한 기타 면세소득

전항 제(10)호의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제 5 조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준과 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정하며,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 (1) 장애인, 무의탁노인 및 열사(烈士) 유족의 소득
 - (2) 자연재해로 인해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국무원이 기타 세금 감면의 상황을 정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제 6 조 과세소득의 계산

- (1) 거주자 개인의 종합소득은 매 1 개 납세연도의 수입액에서 비용 6 만 위안과 전항

공제, 전항 부가공제 및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 기타 공제액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2) 비거주자의 임금, 급여소득은 매월 수입액에서 비용 5 천 위안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매 회 수입액이 과세소득이다.

(3) 경영소득은 매 1 개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4) 재산임대소득은 매회 수입이 4 천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용 8 백위안을 감한다. 4 천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20%의 비용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5) 재산양도소득은 재산양도 수입액에서 재산원가 및 합리적인 비용을 감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이다.

(6) 이자, 주식배당금, 특별배당금 소득과 우발소득은 매회 수입액이 과세소득이다.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수입액에서 20%의 비용을 감한 후의 잔액이 수입액이다. 원고료 소득의 수입액은 70% 기준으로 감액하여 계산한다.

개인이 소득을 교육, 빈곤지역 구제, 빈곤자 지원 등 공익자선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무원이 공익자선사업 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전공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본 조 제 1 항 제(1)호에서 정한 전항 공제는 거주자 개인이 국가가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납부한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등을 포함한다. 전항 부가공제는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이자나 주택임대료, 노인부양 등 지출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범위, 기준 및 실시절차를 국무원에서 확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제 7 조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해당 납부세액에서 경외에서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을 공제한다. 단 공제액은 해당 납세자의 경외소득에 대하여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 조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납세조정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1) 개인과 그의 특수관계자 간의 비즈니스 거래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납부세액이 감소하고,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2) 거주자 개인이 지배하거나 또는 거주자 개인과 거주자 기업이 공동으로 지배하여 실질 세부담이 명확하게 낮은 국가(지구)에 설립한 기업이고 합리적인 경영 수요가 없으며, 응당 거주자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이윤을 분배하지 않거나 분배를 감소시키는 경우

(3) 개인이 기타 합리적인 상업 목적을 갖추지 못한 안배를 통해 부당한 세수이익을 취득한 경우

세무기관이 전항 규정에 따라 납세조정을 하여 세금을 보충 징수해야 하는 경우, 세금을

보충 징수하고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이자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제 9 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자가 납세자이고, 소득을 지불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납세자가 중국 국민 신분증 번호를 보유한 경우에는 중국 국민 신분증 번호가 납세자 식별번호이다. 납세자가 중국 국민 신분증 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에서 납세자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납세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1) 종합소득을 취득하여 종합 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2) 과세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3) 과세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4) 경외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 (5) 해외이주로 인해 중국 호적을 말소하는 경우
- (6) 비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내의 2 곳 이상에서 임금, 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 (7) 국무원이 정한 기타 상황

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전체 인력과 전체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처리해야 하며, 또한 납세자에게 해당 개인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종합소득은 연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세금을 예비 공제하여 예납한다. 종합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 1일에서 6월 30일 내에 종합 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예비 공제 및 예납 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거주자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항 부가공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세액 예납시 규정에 따라 공제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비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및 특허권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세액을 대리공제 및 납부하며 종합 정산하지 않는다.

제 12 조 납세자가 취득한 경영소득은 연간 단위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납세자가 월간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표를 발송하고 세액을 예납하며,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 31일 이전까지 종합 정산을 진행한다.

납세자가 취득하는 이자, 주식배당금, 특별배당금 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과 우발소득은 매월 또는 매회를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한다.

제 13 조 납세자가 취득한 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소득을 취득한 익월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납세자가 취득한 과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6월 30일 이전에 세금을 납부한다. 세무기관이 기한 내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 납세자는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 1일에서 6월 30일 이내에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내의 2곳 이상에서 임금, 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을 취득한 익월 15일 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해외이주로 인해 중국 호적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중국 호적을 말소하기 전에 세금의 정산 납부를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또는 매회 기준으로 예비 공제, 대리 공제하는 세금을 익월 15일 이내에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공제 납부 신고표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납세자가 종합 정산 및 퇴세수속을 처리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자를 위해 종합 정산 및 퇴세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심사한 후 국고 관리에 관한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퇴세수속을 처리한다.

제 15 조 공안,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 등 유관 부문은 세무기관에 협조하여 납세자의 신분, 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 위생, 의료보장, 민정, 인력자원 사회보장, 주택 도시 및 농촌(城鄉) 건설, 공안,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 등 유관 부문은 세무기관에 납세자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 이자,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등 전항 부가공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부동산 등기 등 유관 정보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대조 검사한다. 등기기구는 이전등기를 처리할 때, 해당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완납증빙을 검사해야 한다. 개인의 지분권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를 처리할 때, 시장주체등기기관이 해당 지분권 거래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완납증빙을 검사해야 한다.

유관 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납세자, 원천징수자가 본 법을 준수하는 상황을 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연합하여 격려하거나 징계한다.

제 16 조 각 항 소득의 계산은 인민폐로 한다. 소득이 인민폐 이외의 화폐인 경우, 인민폐 환율 중간값을 기준으로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제 17 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의 2%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제 18 조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개시, 징수 감면, 징수 중단 및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제 19 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기관과 해당 근무인력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 20 조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는 본 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 21 조 국무원은 본 법에 의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 22 조 본 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소득세 세율표 1

(종합소득에 적용)

등급	전체 연도의 과세소득	세율 (%)
1	36,000 위안 이하	3
2	36,000 위안 초과 ~ 144,000 위안	10
3	14,4000 위안 초과 ~ 300,000 위안	20
4	300,000 위안 초과 ~ 420,000 위안	25
5	420,000 위안 ~ 660,000 위안	30
6	660,000 위안 ~ 960,000 위안	35
7	960,000 위안 초과액	45

(비고 1: 본 표에서 지칭하는 ‘전체 연도의 과세소득’은 본 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종합소득으로 매 1 개 납세연도의 수입액에서 비용 6 만 위안과 전항 공제, 전항 부가공제 및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 기타 공제액을 감한 후의 잔액을 의미한다.)

비고 2: 비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임금, 급여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및 특허권사 용료 소득은 본 표를 월간 기준으로 환산한 후에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개인소득세 세율표 2

(경영소득에 적용)

등급	전체 연도의 과세소득	세율 (%)
1	30,000 위안 이하	5
2	30,000 위안 초과 ~ 90,000 위안	10
3	90,000 위안 초과 ~ 300,000 위안	20
4	300,000 위안 초과 ~ 500,000 위안	30
5	500,000 위안	35

(비고: 본 표에서 지칭하는 ‘전체 연도의 과세소득’은 본 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1 개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감한 후의 잔액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1994년 1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142호 발표, 2005년 12월 1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제 1차 수정, 2008년 2월 18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제 2차 수정, 2011년 7월 1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제 3차 수정, 2018년 12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707호 제 4차 수정)

제 1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개인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조 개인소득세법에서 지칭하는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다는 것은 호적, 가정, 경제이의 관계로 인해 중국 경내에서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경내와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각각 중국 경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과 중국 경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제 3조 국무원 재정 및 세무 주관 부문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에서 열거하는 소득은 지급 지역이 중국 경내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중국 경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이다.

3.1 임직, 고용, 계약이행 등 중국 경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

3.2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재산이 중국 경내에서 사용되어 취득한 소득

3.3 각종 특허권을 중국 경내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하여 취득한 소득

3.4 중국 경내의 부동산 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중국 경내의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

3.5 중국 경내기업, 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거주자 개인에게서 취득하는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

제 4조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고, 중국 경내에서의 누계거주기간이 만 183일인 연도가 연속하여 만 6년이 되지 않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備案)하여 중국 경외에 원천이 있고 동시에 경외단위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납부를 면제한다. 중국 경내에서의 누계거주기간이 만 183일인 어느 연도에서의 1회 출경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중국 경내에서의 누계거주기간이 만 183일인 연도의 연속 연한으로 다시 기산한다.

제 5조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고, 1개 납세연도 중 중국 경내에서의 누계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국 경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은 경외 고용주가 지급하

고 동시에 해당 고용주의 중국 경내 기구, 장소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납부를 면제한다.

제 6 조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각 항목별 개인소득의 범위:

6.1 임금 및 급여 소득은 개인이 임직 또는 고용으로 취득한 임금, 급여, 상여금, 연말추가상여금, 근로분배이익, 보조금, 수당 및 임직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소득을 의미한다.

6.2 용역보수 소득은 개인이 용역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하며 설계, 장식, 설치, 제도, 화학실험, 측정, 의료, 법률, 회계, 자문, 강의, 번역, 원고심사, 서화, 조각, 영화, 녹음, 녹화, 연출, 연기, 광고, 전시, 기술서비스, 소개서비스, 중개서비스, 대리서비스 및 기타 용역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을 포함한다.

6.3 원고료 소득은 개인이 작품을 도서, 간행물 등 형식으로 출판, 발표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6.4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개인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기술 및 기타 특허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저작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은 원고료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5 경영 소득을 다음을 의미한다.

6.5.1 개체공상호가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개인독자기업의 투자자, 동업기업의 개인동업인이 경내에 등록된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의 생산, 경영에 원천을 두고 취득한 소득

6.5.2 개인이 합법적으로 교육, 의료, 자문 및 기타 유상서비스 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6.5.3 개인이 기업, 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 및 하청, 책임대를 통해 취득한 소득

6.5.4 개인이 기타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6.6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은 개인이 채권, 지분권 등을 보유하여 취득한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을 의미한다.

6.7 재산임대 소득은 개인이 부동산, 기계설비, 차량선박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6.8 재산양도 소득은 개인이 유가증권, 지분권, 동업기업 중의 재산점유분, 부동산, 기계설비, 차량선박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6.9 우발 소득은 개인이 수상, 당첨, 복권 당첨 및 기타 우발적 성격의 소득을 의미한다.

개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소득항목 판정이 어려운 경우, 국무원 주관 부문에서 확정한다.

제 7 조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제 8 조 개인소득 형식에는 현금, 실물, 유가증권 및 기타 형식의 경제이익이 포함된다. 소득이 실물인 경우 취득 증빙에 명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증빙이 없는 실물 또는 증빙에 명시된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소득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소득이 기타 형식의 경제이익인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제 9 조 개인소득세법 제 4 조 제 1 관 제 2 항의 국채이자란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취득한 이자를 의미한다.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 이자는 개인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발행된 금융채권을 보유하여 취득한 이자를 의미한다.

제 10 조 개인소득세법 제 4 조 제 1 관 제 3 항의 국가의 통일 규정에 따라 발급된 보조금, 수당은 국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된 정부 특수수당, 원사(院士)수당 및 국무원이 개인소득세 납부 면제를 규정한 기타의 보조금, 수당을 의미한다.

제 11 조 개인소득세법 제 4 조 제 1 관 제 4 항의 복리비는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조직이 공제하여 유보한 복리비 또는 공회경비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을 의미한다. 구제금이란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계곤란 보조비를 의미한다.

제 12 조 개인소득세법 제 4 조 제 1 관 제 8 항의 유관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가 허용되는 각국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인원의 소득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 및 면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 및 면제조례>에서 면세로 정한 소득을 의미한다.

제 13 조 개인소득세법 제 6 조 제 1 관 제 1 항의 법에 의거하여 확정되는 기타공제에는 개인이 납부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연금, 직업연금, 개인이 구매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성 건강보험, 세수거치형 상업 양로보험의 지출과 국무원이 공제를 허용한 기타 항목이 포함된다.

특정 항목 공제, 특정 항목 부가공제 및 법에 의거하여 확정되는 기타 공제는 거주자 개인의 1 개 납세연도 과세소득액을 한도액으로 하며, 1 개 납세연도 공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제 14 조 개인소득세법 제 6 조 제 1 관 제 2 항, 제 4 항, 제 6 항의 매회는 각각 아래에서 열거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14.1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의 일회성 수입은 해당 수입의 취득이 매회 수입이다.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연속성 수입은 1 개월 내에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이다.

14.2 재산임대 소득은 1 개월 내에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이다.

14.3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은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의 지급 시 취득한 수

입이 매회 수입이다.

14.4 우발 소득은 매회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이다.

제 15조 개인소득세법 제 6 조 제 1 관 제 3 항의 원가, 비용은 생산, 경영 활동 중 발생한 각종 직접적인 지출과 원가로 분배 계상된 간접비용 및 영업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을 의미한다. 손실은 생산, 경영 활동 중에 발생한 고정자산, 재고의 실사 손실, 훼손 손실, 폐기 손실, 재산양도 손실, 대손 손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기타 손실을 의미한다.

경영 소득을 취득한 개인이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매 1 개 납세연도의 과세소득액 계산시에 비용 6 만 위안, 특정 항목 공제, 특정 항목 부가공제 및 법에 의거하여 확정되는 기타 공제를 감하여야 한다. 특정 항목 부가공제는 연말정산을 처리할 때 감액한다.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으나 완전하고 정확한 납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과세소득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과세소득액 또는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제 16 조 개인소득세법 제 6 조 제 1 관 제 5 항에서 정한 재산원가는 아래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16.1 유가증권: 매입가격 및 매입 시 규정에 따라 납부한 유관 비용

16.2 건축물: 건축비 또는 구매가격과 기타 유관 비용

16.3 토지사용권: 토지사용권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 토지개발 비용 및 기타 유관 비용

16.4 기계설비, 차량선박: 구매가격, 운임, 설치비 및 기타 유관 비용

기타 재산은 전항에서 정한 방법을 참고하여 재산원가를 확정한다.

납세자가 완전하고 정확한 재산원가 증빙을 제공하지 않아 본 조 제 1 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산원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서 재산원가를 산정한다.

개인소득세법 제 6 조 제 1 관 제 5 항의 합리적 비용은 재산 매각시에 규정에 따라 지급한 유관 세금과 비용을 의미한다.

제 17 조 재산양도 소득은 매회 재산양도 수입액에서 재산원가와 합리적 비용을 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세한다.

제 18 조 2 인 이상의 개인이 동일 프로젝트 수입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매 1 인이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 각각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세한다.

제 19 조 개인소득세법 제 6 조 제 3 관의 개인이 소득을 교육, 빈곤구제, 빈민지원 등 공익자선사업에 대한 기부는 개인이 소득을 중국 경내의 공익성 사회조직,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 빈곤구제, 빈민지원 등 공익자선사업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소득액은 기부액을 계산하여 공제하기 전의 과세소득액을 의미한다.

제 20 조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내 및 경외에서 취득한 종합 소득, 경영 소득은 각각 합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중국 경내 및 경외에서 취득한 기타 소득은 구분하여 단독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 21 조 개인소득세법 제 7 조의 경외에서 기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은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원천국가(지역)의 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동시에 실제로 기납부한 소득세 세액을 의미한다.

개인소득세법 제 7 조의 납세자 경외 소득에 대한 본 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은 거주자 개인이 경외에서 기납부한 종합 소득, 경영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한도액이다(이하 '이중과세방지 한도액').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문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경외의 1 개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종합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한도액, 경영 소득 이중과세방지 한도액 및 기타 소득의 이중과세방지 한도액의 총합이 해당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한도액이다.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외의 1 개 국가(지역)에서 실제로 기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이 전관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 중국에서 차액부문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단, 이후 납세연도에 해당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소득의 이중과세방지 한도액 잔액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추가 공제기한은 최장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2 조 거주자 개인이 경외에서 기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을 공제 신청할 경우, 경외세무 기관이 발급한 세금 귀속연도의 유관 납세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개인소득세법 제 8 조 제 2 관에서 규정한 이자는 세금 귀속 납세 신고기간 마지막 일 중국인민은행에서 공시한 것과 추가 납부기간 동기(同期)의 인민폐 대출 기준이율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세금 납세 신고기간 만 회차 다음날부터 추가 납부세금 기한 만료일까지 일일 추가 징수한다. 납세자가 추가 세금 납부기간 만료 전 세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이자 추가 징수는 추가 세금 납부일까지 이다.

제 24 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과세항목을 지급할 경우,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예비 공제 또는 원천징수 하고, 적시에 국고에 납부하며 또한 특정 항목은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전관의 지급이란 현금 지급, 어음 지급, 계좌이체 지급과 유가증권, 실물 및 기타 형식의 지급을 포함한다.

제 25 조 종합 소득을 취득하여 연말정산 처리가 필요한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25.1 2 곳 이상에서 취득한 종합 소득, 동시에 종합 소득 연수입액에서 특정 항목 공제를 감한 잔액이 6 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25.2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중 1 개 또는 다수 소득, 동시에 종합 소득 연수입액에서 특정 항목 공제를 감한 잔액이 6 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25.3 납세연도 내 선납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25.4 납세자가 퇴세(번역자 주: 세금 환급)를 신청한 경우

납세자가 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국 경내에서 개설한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또한 연말정산 현지 지역에서 세금 국고 환급을 처리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주관 부문이 제정한다.

제 26조 개인소득세법 제 10 조 제 2 관의 전체 인원 모든 금액 원천징수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다음달 15 일 내 주관 세무기관에 소득을 지급한 모든 개인의 유관 정보, 지급 소득금액, 공제 사항과 금액, 원천징수세액의 구체적 금액과 총액 및 기타 세무 관련 정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27 조 납세자가 납세 신고를 처리하는 장소 및 기타 유관 사항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제 28 조 거주자 개인이 임금 및 급여 소득을 취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특정 항목 부가공제 유관 정보를 제공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시에 특정 항목 부가공제를 감할 수 있다. 납세자가 동시에 2 곳 이상에서 임금 및 급여 소득을 취득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특정 항목 부가공제를 감할 경우, 동일한 특정 항목 부가공제에 대해서는 1 개 납세연도 내 오직 1 곳에서 취득한 소득에서 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및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연말정산 시 세무기관에 유관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항목 부가공제를 감하여야 한다.

제 29 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기타단위와 개인에게 위탁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제 30 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에 맞춰 원천징수 신고를 계산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공하거나 원천징수 신고한 개인정보, 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이 실제상황과 맞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을 거절할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에 따라 특정 항목 부가공제와 관련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특정 항목 부가공제 정보에 대해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세무 주관부문에서 별도 규정한다.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제공한 허위 정보를 발견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유관 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시스템에 올리고 동시에 공동 징계를 실시한다.

제 31 조 납세자가 퇴세 신청 시에 제공한 연말정산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수정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수정한 경우, 세무기관은 적시에 퇴세를 처리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퇴

세 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유관 자료에 근거하여 퇴세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32 조 소득이 인민폐 이외의 화폐인 경우,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 신고를 처리한 전월 마지막일 인민폐 환율 중간 값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연도 종료 후 연말정산을 처리할 경우, 이미 월별, 분기별 또는 회차별 선납세액에 대한 인민폐 이외의 화폐 소득에 대해서는 재차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소득 부분은 이전 납세연도 마지막일 인민폐 환율 중간 값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제 33 조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법 제 17 조에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속비를 지급할 경우 반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반환서를 근거로 국고관리 유관 규정에 따라 국고 환급 수속을 처리한다.

제 34 조 개인소득세 납세 신고표 및 원천징수 개인소득세 보고표와 개인소득세 완납증명양식은 국무원 세무 주관부문이 통일시켜 제정한다.

제 35 조 군대 인원 개인소득세 징수 사안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6 조 본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잠정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2018]41 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와 직속기구 :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잠정방법>을 인쇄발부하오니 확실하게 관철하여 집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2018년 12월 13일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잠정방법

제 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개인소득세법>'으로 약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라 함은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치료, 주택자금대출이자 또는 주택임차료, 노인봉양 등 6 개 항목의 특별부가공제를 지칭한다.

제3조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는 공평·합리, 민생에 유익, 간편·수월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특별부가공제의 범위와 기준은 교육, 의료, 주택, 노인봉양 등 민생 지출의 변화 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정한다.

제 2장 자녀교육

제5조 납세자 자녀의 전일제 학력교육과 관련된 지출은 자녀 1 인당 월 1,000 위안의 기준으로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학력교육은 의무교육(초등교육, 초급중등교육), 고급중등 단계의 교육(일반 고급중등교육, 중등 직업교육, 기능공 교육), 고등교육(전문대, 대학 학부, 석사 연구생, 박사 연구생 교육)을 포함한다.

만 3 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취학 전 교육 단계에 있는 자녀의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부모의 선택에 따라 부모 중 한명이 공제기준의 100%를 공제하거나 두명이 각각 공제기준의 50%를 공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자녀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납세자는 검사에 대비하여 해외 학교의 입학통지서, 유학사증 등 관련 교육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 3 장 계속교육

제8조 납세자가 중국 내에서 학력(학위) 계속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발생한 지출은 학력(학위)교육을 이수하는 기간에 월 400 위안의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동일 학력(학위) 계속교육의 공제기간은 48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가 기능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 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발생한 지출은 관련 증서를 취득한 연도에 한해 3,600 위안의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제9조 개인이 대학 학부 및 그 이하의 학력(학위) 계속교육을 이수함에 있어 이 방법에 규정된 공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선택에 의해 그의 부모 또는 본인이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 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을 이수하는 납세자는 검사에 대비하여 관련 증서 등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 4 장 중병치료

제11조 한 납세연도 내에 납세자에게 발생한 기본의료보험 관련 의약비 지출은 의료보험 정산 후의 개인부담금(의료보험 목록 범위 내의 개인지급 부분) 누계가 15,000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가 연말정산 시 80,000 위안의 한도 내에서 실지출 금액을 공제한다.

제12조 납세자의 의약비 지출은 선택에 의해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제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의약비 지출은 선택에 의해 부모 중 한명이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 및 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의약비 지출은 이 방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제13조 납세자는 검사에 대비해 의약 서비스 비용 및 의료보험 정산 관련 영수증 원본(또는 복사본) 등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의료보장부서는 환자에게 의료보장 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환자 본인의 연간 의약비 정보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주택자금대출이자

제14조 납세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상업은행 또는 주택공적금 개인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명의로 중국 내에서 주택을 구매함으

로써 발생하는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출은 대출이자 실제 발생연도에 한해 월 1,000 위안의 기준에 따라 고정금액을 공제하며 그 공제기간은 가장 240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는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이자 공제 혜택을 한번만 누릴 수 있다.

이 방법에서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이라 함은 주택 구매 시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이자율을 적용 받은 주택자금대출을 지칭한다.

제15조 부부간의 약정에 의해 부부 중 한명이 공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할 수 있다.

부부가 혼전에 각각 별도로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출은 결혼 후에 둘 중 한 주택을 선택하여 해당 주택의 구매자가 공제기준의 100%를 공제하거나 부부 쌍방이 각자가 구매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제기준의 50%를 공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납세자는 감사에 대비해 주택자금대출계약, 대출금 상환 지출 증빙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 6 장 주택임차금

제17조 납세자가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임차금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정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1) 직할시·성도(자치구 행정부 소재지)도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와 국무원이 확정된 기타 도시는 월 1,500 위안을 공제기준으로 한다.
- (2) 제(1)호에 나열된 도시를 제외한 기타 도시로 시할구(市轄區)의 호적인구가 100 만명을 초과한 도시의 경우 월 1,100 위안을 공제기준으로 하며, 시할구(市轄區)의 호적인구가 100 만명을 초과하지 아니한 도시의 경우 월 800 위안을 공제기준으로 한다.

납세자의 배우자가 납세자의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납세자가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할구(市轄區)의 호적인구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제18조 이 방법에서 주요 근무도시라 함은 납세자가 임직·피고용된 직할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부성급(副省級)도시, 지급시(地級市)(지역·주(州)·맹(盟))의 행정구역 전역을 지칭하며 임직업체·고용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청을 접수한 세무기관의 소재 도시로 한다.

부부의 주요 근무도시가 동일한 경우 부부 중 한명만이 주택임차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 주택임차금 지출은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공제한다.

제20조 납세자와 그의 배우자는 한 납세연도 내에 주택자금대출이자 및 주택임차금에 대한 특별부가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없다.

제21조 납세자는 검사에 대비하여 주택임차계약서·협의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 7 장 노인봉양

제22조 납세자가 1 명 및 그 이상의 피봉양인을 봉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출은 통일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 (1) 납세자가 외자녀인 경우 월 2,000 위안의 기준으로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 (2) 외자녀가 아닌 납세자의 경우 그와 그의 형제자매가 월 2,000 위안의 공제한도액을 분할 공제하되 각 자녀에게 할당된 공제금액이 월 1,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봉양인에 균등할당하거나 약정한 바에 따라 할당할 수 있으며 피봉양인이 지정한 바에 따라 할당할 수도 있다. 약정할당 또는 지정할당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된 할당협의를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할당이 약정할당을 우선한다. 구체적인 할당방식과 할당액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 이 방법에서 피봉양인이라 함은 만 60 세 이상의 부모, 그리고 자녀가 모두 사망한 만 60 세 이상의 조부모·외조부모를 지칭한다.

제 8 장 보장조치

제24조 납세자가 수금업체에 영수증(發票)·재정영수증(財政票據)·지출증빙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수금업체는 발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특별부가공제 혜택을 최초로 누리는 납세자는 특별부가공제 관련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적시에 관련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그가 제출하는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온전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별부가공제 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적시에 관련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 항에서 특별부가공제 관련 정보라 함은 납세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 피봉양인 등의 개인적인 신분 정보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규정한 특별부가공제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검사에 대비하여 납세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자료는 최소한 5 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유관부서·기관은 특별부가공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공하고 세무기관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데 협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1)公安부서의 호적인구 관련 기본정보, 가구 구성원 관계 정보, 출입국증서 정보, 출국자 관련 정보, 호적인구 사망표시 등 정보;
- (2) 위생건강부서의 출생 관련 의학증명 정보, 외자녀 정보;
- (3) 민정부서·외교부서·법원의 혼인상태 관련 정보;

- (4) 교육부서의 학생 학적 관련 정보(학력 계속교육 학생 학적, 수험자격 정보), 관련 부서에 비안(備案)한 해외 교육기구 자격 정보;
- (5)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등 부서의 기능공교육학교 학생 학적 정보, 기능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 정보, 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 정보;
- (6) 주택도농건설부서의 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 임대 관련 정보, 주택공적금관리기구의 주택공적금대출 상환 지출 관련 정보;
- (7) 자연자원부서의 부동산 등기 정보;
- (8) 인민은행·금융감독관리부서의 주택자금상업대출 상환 지출 관련 정보;
- (9) 의료보장부서의 의료보장 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의약비 개인 부담 정보;
- (10)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한 기타 세금 관련 정보.

상기 데이터·정보의 형태, 표준, 공유방식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 및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세무국이 유관부서와 상의하여 확정한다.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유관부서·기관이 소정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 또는 기관의 주요책임자와 관계자가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27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가 실제상황과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상황을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세무기관이 특별부가공제 상황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의 임직업체·고용업체 소재지, 실거주지, 호적소재지의公安파출소,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은 세무기관의 확인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장 부칙

제29조 이 방법에서 부모라 함은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를 지칭한다. 이 방법에서 자녀라 함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계자녀, 양자녀를 포함한다. 부모 이외의 미성년자 후견인은 이 방법의 규정에 맞추어 집행한다.

제30조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한도액을 한 납세연도에 모두 공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제31조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32조 이 방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신(新) 개인소득세법 몇 가지 징수관리 연결 문제의 전면적 실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 년 제 56 호

새롭게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이하 ‘신(新) 개인소득세법’)을 관철하여 실행시키기 위해, 신(新) 개인소득세법 전면 실시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개인 임금 및 급료 소득,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는 계산방법, 비거주자 개인의 상술한 4 가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는 계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거주자 개인 원천징수 납부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개인에게 임금 및 급료 소득,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을 지불할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주관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표>(첨부 1 참조)를 제출한다. 연말 원천징수 납부세액과 연말 미납세액이 불일치할 경우, 거주자 개인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관세무기관에서 종합소득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세액이 많을 경우 돌려받고 적을 경우 추가 납부한다.

1.1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개인에게 임금 및 급료 소득을 지불할 경우, 누적 원천징수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고, 월간 전체 인원의 모든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처리한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당기 원천징수 납부세액=(누적 원천징수 납부 과세소득액×원천징수율-속산공제액)-누적 감면세액-누적 기 원천징수 납부세액

누적 원천징수 납부 과세소득액=누적 수입-누적 면세수입-누적 공제비용-누적 특정항목 공제-누적 특정항목 부가공제-누적 법에 의거 확정된 기타공제

그 중, 누적 공제비용은 5000 위안/월×납세자 그 해 당월까지 본 단위에서의 보직·고용된 개월 수에 따라 계산한다.

상술한 공식 중, 거주자 개인 임금 및 급료 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원천징수율 및 속산

공제액은 <개인소득세법 원천징수율 표 1>(첨부 2 참조)에 따라 집행한다.

1.2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가 개인에게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을 지불하고, 회별 또는 월별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이 수입액이다. 그 중, 원고료 소득의 수입액은 70%을 공제하고 계산한다.

공제비용: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매 회 수입이 4 천 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공제비용은 800 위안으로 계산한다. 매 회 수입이 4 천 위안 이상일 경우, 공제비용은 20%으로 계산한다.

과세소득액: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매 회 수입액이 원천징수 납부 과세소득액이다. 용역보수 소득은 20%~40%의 초과액 누진 원천징수율(첨부 2.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율 표 2> 참조)을 적용하고, 원고료 소득 및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20%의 비율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한다.

용역보수 소득의 원천징수 납부세액=원천징수 납부 과세소득액×원천징수율-속산공제액

원고료 소득 및 특허권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납부세액=원천징수 납부 과세소득액×20%

2. 비거주자 개인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 개인에게 임금 및 급료 소득,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을 지불할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월별 또는 회별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개인의 임금 및 급료 소득은 매월 수입액에서 5 천 위안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이 과세소득액이다.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매 회 수입액이 과세소득액이다. 월별 환산 후의 비거주자 개인 월간 세율표(첨부 2.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율 표 3> 참조)를 적용하여 미납세액을 계산한다. 그 중,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수입에서 20%의 비용을 제한 후의 잔액이 수입액이다. 원고료 소득의 수입액은 70%을 공제하고 계산한다.

비거주자 개인 임금 및 급료 소득,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미납세액= 과세소득액×세율-속산공제액

본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 첨부 : 1.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신고표> 및 작성설명 (다운로드)
2. 개인소득세 세율표 및 원천징수율 표 (다운로드)

국가세무총국
2018년 12월 19일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 61 호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를 관철하고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범시행)>을 제정하여 발표하는 바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개인소득세 세율표 및 원천공제율표

국가세무총국

2018년 12월 21일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 (시범시행)

제1조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행위를 규율하고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 또는 개인을 지칭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거하여 전원전액(全員全額) 원천징수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원전액(全員全額) 원천징수신고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공제한 후 익월 15일까지 그가 소득을 지급한 개인의 관련 정보, 지급한 소득 액수, 공제 항목과 액수, 원천징수한 세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총액 및 기타 세무 관련 정보자료를 관할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을 지칭한다.

제3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또는 매회 원천공제한 세금을 익월 15일까지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다음 각 호의 소득은 개인소득세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를 시행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 (1) 임금·급여소득;
- (2) 노무보수소득;
- (3) 원고료소득;
- (4) 특허권사용료소득;
- (5)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 (6) 재산임대소득;
- (7) 재산양도소득;
- (8) 우발소득.

제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에게 최초로 소득 지급 시 납세자로부터 제공받은 납세자 식별번호 등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 기초정보표(표 A)>를 작성하여야 하며 익월 원천징수신고 이행 시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그에게 제공한 관련 기초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익월 원천징수신고 이행 시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민 개인에게 임금·급여소득 지급 시 누계원천공제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공제하여야 하며 월별로 원천징수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누계원천공제법이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한 납세연도 내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납세자가 본 업체에서 당월까지 취득한 임금·급여소득의 누계 소득에서 누계 면세소득, 누계 차감비용, 누계 특별공제, 누계 특별부가공제 및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 기타공제의 누계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누계 원천징수대상소득액으로 하고 개인소득세 원천공제율표 1(첨부 참고)에 근거하여 누계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한 후 누계 감면세액과 누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당기의 원천징수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세금 환급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 납세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잔액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경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정산한다.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당기 원천징수세액 = (누계 원천징수대상소득액 × 원천공제율 - 속산공제액) - 누계 감면세액 - 누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누계 원천징수대상소득액 = 누계 소득 - 누계 면세소득 - 누계 차감비용 - 누계 특별공제
- 누계 특별부가공제 -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 기타공제의 누계액

그중에서 : 누계 차감비용은 5,000 위안/월에 당월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당년도에 본업체에
서 임직한 월수 또는 본 업체에 의해 고용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7조 거주민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에 의거하여 특별
부가공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에 따라 월별로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시 특별부가공제 처리를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민 개인에게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지
급 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횡수별 또는 월별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소득
액으로 한다. 그중에서 원고료소득은 70%를 소득액으로 계산한다.

차감비용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시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의 매회 수
입이 4,000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 위안을 비용으로 차감하고, 매회 수입이
4,000 위안 이상인 경우 소득의 20%를 비용으로 차감한다.

과세소득액 :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매회의 소득액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액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한다. 노무보수소득은 개인소득세 원천공제율표 2(첨부
참고)를 적용받으며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20%의 원천공제세율을 적용받는다.

거주민 개인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이행 시 법에 의거하여 산출된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
득 및 특허권사용료소득의 소득액을 연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산정
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민 개인에게 임금·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및
특허권사용료소득 지급 시 아래의 방법에 따라 월별 또는 횡수별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비거주민 개인의 임금·급여소득은 매월의 수입에서 5,000 위안의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
을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매회의 소득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하고 개인소득세 세율표 3(첨부 참고)에 근거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노
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소득에서 20%의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소득액으로 한다. 그중에서 원고료소득은 70%를 소득액으로 계산한다.

비거주민 개인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 불가하고, 거주민 개인
의 요건에 도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초정보 변화 상황을 고지하여야 하며 연도 중

료 후 거주민 개인 관련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또는 우발소득 지급 시 법에 의거하여 횡수별 또는 월별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으로 1 회적 소득에 속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취득을 1 회로 하며 동일 항목의 연속적 소득에 속하는 경우 1 개월 내에 취득한 소득을 1 회로 한다.

재산임대소득은 1 개월 내에 취득한 소득을 1 회로 한다.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은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지급 시 취득한 소득을 1 회로 한다.

우발소득은 매회 해당 소득 취득을 1 회로 한다.

제12조 납세자가 조세협정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소득 취득 시 자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구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시 조세협정 혜택 적용 관련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임금·급여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도 종료 후 2 개월 내에 납세자에게 그의 개인소득과 기(既) 원천징수세액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연도 중에 상기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응당히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취득하는 임금·급여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후 적시에 납세자에게 그의 개인소득과 기(既) 원천징수세액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무단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가 실제상황과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공하거나 원천징수신고한 개인정보, 지급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정보가 실제상황과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검사에 대비해 납세자가 제공한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정보표>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1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특별부가공제 등 관련 세무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연도별로 2%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세무기관, 사법기관 등이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과 추가 원천징수를 명한 세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수령한 원천징수 수수료는 세무능력 증진, 세무인력 장려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납세자가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적시에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천징수의무자자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자료와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와 달리 특별부가공제를 허위로 공제하거나, 응당히 원천공제하여야 하는 세금을 원천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원천공제한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차용·도용하는 행위를 행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등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이 방법에서 언급된 관련 서류(票證單書)의 서식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전원전액(全員全額) 원천징수신고 관리 잠정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세발[2005]205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

개인소득세 원천공제율표 1

(거주민 개인의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에 적용)

등급	누계 원천징수대상소득액	원천공제율(%)	속산공제액
1	36,000 위안 이하	3	0
2	36,000 위안 초과 ~ 144,000 위안	10	2,520
3	144,000 위안 초과 ~ 300,000 위안	20	16,920
4	300,000 위안 초과 ~ 420,000 위안	25	31,920
5	420,000 위안 초과 ~ 660,000 위안	30	52,920
6	660,000 위안 초과 ~ 960,000 위안	35	85,920
7	960,000 위안 초과	45	181,920

개인소득세 원천공제율표 2

(거주민 개인의 노무보수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에 적용)

등급	원천징수대상소득액	원천공제율(%)	속산공제액
1	20,000 위안 이하	20	0
2	20,000 위안 초과 ~ 50,000 위안	30	2,000
3	50,000 위안 초과	40	7,000

개인소득세 세율표 3

(비거주민 개인의 임금·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에 적용)

등급	과세소득액	세율(%)	속산공제액
1	3,000 위안 이하	3	0
2	3,000 위안 초과 ~ 12,000 위안	10	210
3	12,000 위안 초과 ~ 25,000 위안	20	1,410
4	25,000 위안 초과 ~ 35,000 위안	25	2,660
5	35,000 위안 초과 ~ 55,000 위안	30	4,410
6	55,000 위안 초과 ~ 80,000 위안	35	7,160
7	80,000 위안 초과	45	15,160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 62호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종합소득 취득으로 연말정산이 필요한 납세신고

종합소득을 취득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납세자가 두 곳 이상으로부터 종합소득을 취득하였고 그 종합소득의 연간 소득액에서 특별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이 6 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2) 납세자가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중의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소득을 취득하였고 그 종합소득의 연간 소득액에서 특별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이 6 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3) 납세연도 중에 예납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 (4)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필요한 납세자는 취득한 소득에 대해 익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임직·고용업체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연도 자진납세신고표>를 제출하여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의 임직·고용업체가 두 곳 이상인 경우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임직·고용업체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임직·고용업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호적 소재지 또는 경상거주지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한다.

종합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납세자는 소득,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법에 의해 확정된 기타 공제, 기증, 세금혜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보관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종합소득 취득에 따른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고한다.

2. 경영소득 취득에 대한 납세신고

자영업자(個體工商戶),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합명기업 개인 파트너, 도급임차경영자 개인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개인이 취득하는 경영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된다.

- (1) 자영업자가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소득,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및 합명기업의 파트너가 중국 내에 등록된 개인독자기업, 합명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을 통해 취득한 소득;
- (2) 개인이 법에 따라 학원운영, 의료, 자문 및 기타 유료 용역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소득;
- (3) 개인이 기업·사업기관에 대한 도급경영·임대경영 및 하도급·전대로 인해 취득한 소득;
- (4) 개인이 기타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소득.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납세자는 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경영관리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 A)>를 제출하여 개인소득세 예납신고를 한다. 소득 취득 익년 3월 31일까지 경영관리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 B)>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한다. 두 곳 이상으로부터 경영소득을 취득한 경우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그 경영관리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 C)>를 제출하여 연말총괄신고를 한다.

3. 과세소득 취득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한 납세신고

과세소득 취득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 (1) 거주민 개인으로 종합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공고 제 1 조에 따라 처리한다.
- (2) 비거주민 개인으로 임금·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 취득 익년 6월 3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표(표 A)>를 제출하여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 그 중 한명의 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한다.

익년 6월 30일 전에 출국(임시출국 제외)하는 비거주민 개인은 출국 전에 납세신고

를 해야 한다.

- (3)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및 우발소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소득 취득 익년 6 월 30 일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자진신고납세표(표 A)>를 제출하여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기관으로부터 기한부 납세 통보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신고

중국 경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취득하는 거주민 개인은 소득 취득 익년 3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국 내 임직·고용업체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중국 내에 임직·고용업체가 없을 경우 호적 소재지 또는 중국 내 경상거주지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호적 소재지와 중국 내 경상거주지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한다. 중국 내에서 호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중국 내 경상거주지의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한다.

5. 해외 이주로 중국 호적 말소에 따른 납세신고

해외 이주로 중국 호적을 말소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중국 호적 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호적 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청산하여야 한다.

- (1) 호적 말소 연도에 종합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개인소득세 연도 자진납세신고표>를 제출하여 당年度の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직전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호적 말소에 따른 납세신고 시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2) 호적 말소 연도에 경영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 B)>를 제출하여 당年度の 경영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두 곳 이상으로부터 경영소득을 취득한 경우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 C)>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직전연도의 경영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호적 말소에 따른 납세신고 시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3) 호적 말소 연도에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및 우발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표(표 A)>를 제출하여 당年度の 상기 소득에 대한 세금완납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4)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미납세금 또는 체납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분할납부 중인 세금이 있고 그 세금을 완

납하지 못한 경우 호적 말소 전에 완납하지 못한 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5) 호적 말소에 따른 납세신고 시 특별부가공제, 법에 의해 확정된 기타 공제 처리가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정보표>, <상업건강보험 세전공제 상황 명세표>, <개인소득세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세전공제 상황 명세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중국 경내에서 두 곳 이상으로부터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비거주인 개인의 납세신고 비거주인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두 곳 이상으로부터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 취득 익월 15 일까지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임직·고용업체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표(표 A)>를 제출하여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7. 납세신고 방식

납세자는 원격 세무처리 시스템, 우편발송 등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8. 기타 관련 사항

(1) 납세자는 자진납세신고 처리 시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로 신고하거나 기초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개인소득세 기초정보표(표 B)>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공고에서 언급된 관련 서류(票證單書)의 서식은 국가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별도로 공고한다.

(2) 납세자가 납세신고 시 조세협정 혜택 적용이 필요한 경우 조세협정 혜택 적용 관련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9. 시행시간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12월 21일

개인소득세법 개정 후 관련 혜택정책의 연결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8]164 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재정청(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을 관철하고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소득세 혜택정책 연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연간 일시불 상여금, 중앙기업 책임자의 연도성과급 이연지급 소득과 임기상여금 관련 정책

(1) 거주민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이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 등의 개인소득세 과세 방법 조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5]9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당년도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연간 일시불 상여금 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얻은 액수에 이 통지에 첨부된 월 환산 종합소득세율표(이하 '월환산세율표'로 약칭)에 따라 확정된 세율과 속산공제액을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계산공식 :

납부세액 = 연간 일시불 상여금 소득 × 적용세율 - 속산공제액

거주민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할 수도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거주민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은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중앙기업 책임자가 취득하는 연도성과급 이연지급 소득과 임기상여금이 <중앙기업 책임자의 연도성과급 이연지급 소득과 임기상여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7]118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통지 제1조 제(1)호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정책은 별도로 정한다.

2. 상장기업 지분 인센티브 관련 정책

(1) 거주민 개인이 취득하는 주식매입선택권, 주식증가차액청구권, 제한부주식, 지분장려 등 지분 인센티브(이하 '지분 인센티브'로 약칭)가 <개인의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5] 35 호), <주식증가차액청구권 소득 및 제한부주식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 5 호),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조세 시범정책을 전국에서 실시할 것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 116 호) 제 4 조, <지분 인센티브 및 기술투자지분의 소득세 정책 보강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 101 호) 제 4 조 제(1)호에 규정된 관련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당년도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에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계산공식 :

$$\text{납부세액} = \text{지분 인센티브 소득} \times \text{적용세율} - \text{속산공제액}$$

(2) 거주민 개인이 한 납세연도에 지분 인센티브를 2 회 이상 취득하는 경우 합병하여 이 통지 제 2 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3)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지분 인센티브 개인소득세 정책은 별도로 정한다.

3. 보험영업원·증권중개인의 중개수수료 소득 관련 정책

보험영업원·증권중개인이 취득하는 중개수수료 소득은 노무보수소득에 해당되며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에서 20%의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소득액으로 하고 소득액에서 영업원가 및 부가조세공과금을 차감한 후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보험영업원·증권중개인의 영업원가는 수입의 25%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보험영업원·증권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소득 지급 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범시행)>(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 61 호)에 규정된 누계원천공제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4. 개인이 수령하는 기업연금·직업연금 관련 정책

개인이 국가에서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 도달 후 수령하는 기업연금·직업연금이 <기업연금·직업연금의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3] 103 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단독으로 계산 및 납부한다. 그중에서, 월 단위로 수령하는 경우 월환산세율표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고, 분기 단위로 수령하는 경우 월별로 균등하게 배부한 후 월 수령액에 월환산세율표를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며, 연 단위로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개인이 해외 이주로 인해 일시불로 수령하는 연금개인계좌 내 자금, 또는 개인이 사망한 후 그가 지정한 수익자 또는 그의 법정상속인이 일시불로 수령하는 연금개인계좌 내 잔액은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개인이 상기 특수사유 이외의 사유로 연금개인계좌 내 자금 또는 잔액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월환산세율표를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5. 근로관계 해지, 조기퇴직, 내부퇴양(內部退養)에 따른 일시불 보상 소득 관련 정책

(1) 개인이 사용업체와의 근로관계 해지로 인해 취득하는 일시불 보상 소득(사용업체가 지급하는 경제보상금, 생활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 포함)의 경우, 해당 지역 직전연도 종업원평균급여의 3 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3 배를 초과한 부분은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2) 개인이 조기퇴직 수속을 이행함으로써 취득하는 일시불 보조금 소득은 조기퇴직 수속 시점부터 정년퇴직연령 까지의 실제 연차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부하여 적용세율과 속산공제액을 확정된 후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계산공식 :

$$\text{납부세액} = \{[(\text{일시불 보조금 소득} \div \text{조기퇴직 수속 시점부터 정년퇴직연령 까지의 실제 연차수}) - \text{비용공제기준}] \times \text{적용세율} - \text{속산공제액}\} \times \text{조기퇴직 수속 시점부터 정년퇴직연령 까지의 실제 연차수}$$

(3) 개인이 내부퇴양(內部退養) 수속을 이행함으로써 취득하는 일시불 보조금 소득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1999] 58 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6. 업체·기관(單位)이 종업원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주택 관련 정책

업체·기관(單位)이 구매가격 또는 건설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종업원에게 주택을 판매함으로써 종업원이 적게 지출한 차액 부분이 <업체·기관(單位)이 종업원에게 저가로 주택 판매 시의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7] 13 호) 제 2 호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당년도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차액 소득을 12 개월로 나눠 얻은 액수에 월환산세율표에 따라 확정된 적용세율과 속산공제액을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계산공식 :

납부세액 = 종업원이 실제로 지급한 주택구매대금과 해당 주택의 구매원가 또는 건설원가의 차액 × 적용세율 - 속산공제액

7. 외국인 개인의 수당·보조금 관련 정책

(1)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거주민 개인의 요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개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를 받거나 <몇 가지 개인소득세 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1994] 20 호), <외국인 개인이 취득하는 수당·보조금의 개인소득세 면제 정책 집행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7] 54 호) 및 <외국인 개인이 취득하는 홍콩·마카오 지역 주택보조금 등 보조금의 개인소득세 면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4] 29 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보조금,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 수당·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기 두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외국인 개인의 선택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이 불가하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개인은 주택보조금,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수당·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8. 상기 사항 이외의 기타 개인소득세 혜택정책은 계속해서 기존 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9. 이 통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다음 각 호의 문건 또는 문건 조항은 동시에 폐지한다.

- (1) <개인이 사용업체와의 근로관계 해지로 인해 취득하는 일시불 보상 소득의 개인소득세 면제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1] 157 호) 제 1 조;
- (2) <개인의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5] 35 호) 제 4 조 제(1)호;
- (3) <업체·기관(單位)이 종업원에게 저가로 주택 판매 시의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7] 13 호) 제 3 조;
- (4) <기업연금·직업연금의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3] 103 호) 제 3 조 제 1 항 및 제 3 항;
- (5) <개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 인수함에 있어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할인금 또는 보조금 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8] 9 호);
- (6) <보험회사의 영업원(비(非)사원)이 취득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8] 13 호);
- (7) <개인이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취득하는 경제보상금 소득의 개인소득세 문제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9] 178 호);
- (8) <국유기업 종업원이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취득하는 일시불 보상 소득의 개인소득세 면제 문제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0] 77 호);
- (9)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 등의 개인소득세 과세방법 조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5] 9 호);
- (10) <보험영업원이 취득하는 중개수수료 소득의 개인소득세 면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6] 454 호);
- (11) <개인의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개인소득세 납부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국세함[2006] 902 호) 제 7 조, 제 8 조;
- (12) <중앙기업 책임자의 연도성과급 이연지급 소득과 임기상여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7] 118 호) 제 1 조;
- (13) <개인이 조기퇴직으로 인해 취득하는 보조금 소득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 6 호) 제 2 호;

(14)<중권중개인의 중개수수료 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
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 45호)

첨부 : 월 환산 종합소득세율표

재정부
세무총국

2018년 12월 27일

첨부

월 환산 종합소득세율표

등급	월간 과세소득액	세율(%)	속산공제액
1	3,000 위안 이하	3	0
2	3,000 위안 초과 ~ 12,000 위안	10	210
3	12,000 위안 초과 ~ 25,000 위안	20	1,410
4	25,000 위안 초과 ~ 35,000 위안	25	2,660
5	35,000 위안 초과 ~ 55,000 위안	30	4,410
6	55,000 위안 초과 ~ 80,000 위안	35	7,160
7	80,000 위안 초과	45	15,160